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5.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9년 6월 5일

나. 발 의 자 : 이규선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9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9.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정옥)

❍ 본 건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노인층 증가,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여 고독사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지원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

발의년월일 : 2019년 6월 일
발 의 자 : 이규선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9. 5.31. ~ 6. 5.)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